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안내문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주)커리어스타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주)커리어스타

□ 지원대상 및 요건(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하며, 입증 자료 제출 필수
(해당조건 별첨)

- 채용 청년은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지원대상 및 요건(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취업애로청년

- 근로조건 등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 지원제외 청년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F-2, F-5, F-6은 가능)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는 가능)

□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 지급
(단, 사업 참여 직전 3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의 채용일은 22.1.1 이후여야 한다.)
- 단, 청년의 **채용일은 '22.1.1부터 ' 22.12.31 이내여야 한다.**
* **동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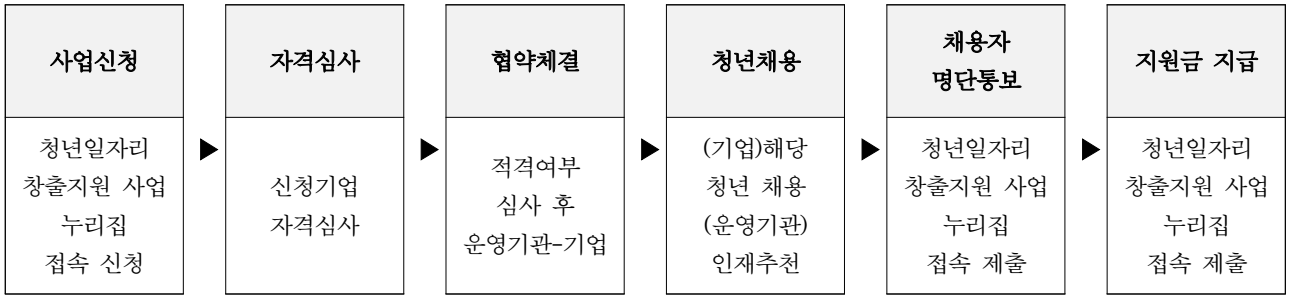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최대 30명),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 * 지원 한도 계산 방식.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 산정 기간 예시.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년.5월에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 21.5월부터 22.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 * **단, 사업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시 제외되며, 고용보험 취득 · 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 피보험자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지원한도
비수도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수도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50% (최대 30명)

□ 지원수준

-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80만원
- * 단,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신청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접속 후 **운영기관 (주)커리어스타 지정**
 -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제출(안내문 하단에 별첨)
- 신청기업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통보
- 참여기업 선정 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협약** 체결
- 운영기관은 기업에서 적격자 채용을 위해 알선지원, 기업에서는 지원대상 요건 충족하는 청년 직접 채용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 * ‘채용자 명단 통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필요시) 등 지원 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참여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 신청
-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증빙자료(급여대장, 임금내역 등)’,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신청문의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 (주)커리어스타
-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별)
 - 북현점** ☎ 053-384-8890/010-5645-8890, E-mail cs3848840@daum.net
 - 사업장 소재지 : 대구 (수성구, 중구, 북구, 동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군위군
 - 달서점** ☎ 053-628-8841/010-5554-7790, E-mail jump6288841@daum.net
 - 사업장 소재지 : 대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 3공단 제외)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①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22년 사업 초에는 "도약장려금" 신청 기업의 모든 구인공고가 전용 채용관에 게재됨*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업의 구인공고가 모두 '도약장려금 전용 채용관'으로 연동되어 게재됨

- '22년 2분기경에는(정확한 시점은 추후 공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이후의 구인공고만 전용 채용관에 게재될 예정

* 구인공고 제목에 "도약장려금"이 명시된 구인공고만 '도약장려금 전용 채용관'으로 연동되어 게재됨

-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취업희망풀」 상의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②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별첨

별첨 1

성장유망업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2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3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4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5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6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7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8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9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10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11	05100	석탄 광업
12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3	06200	비철금속 광업
14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6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7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8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9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20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1	11202	생수 생산업
22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23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24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25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26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7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8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29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30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31	17110	펄프 제조업
32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33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34	18119	기타 인쇄업
35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36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7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8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39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40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41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42	2013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43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44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45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6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47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48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49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50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51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52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53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54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55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56	20423	화장품 제조업
57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58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59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60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61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62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63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64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65	21220	한의원약품 제조업
66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67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8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69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70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71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72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3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4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75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76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7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78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79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80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81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82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83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84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85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86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87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88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89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0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92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3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94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95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96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97	23992	연마재 제조업
98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99	23994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0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101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2	24112	제강업
103	24113	합금철 제조업
104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05	24132	강관 제조업
106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연결구류 제조업
107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108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09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0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1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2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13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14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15	24312	강주물 주조업
116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117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18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119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20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121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122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123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124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125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126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7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8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129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130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31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132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33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4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5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36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137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138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139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140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141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42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43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144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145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146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147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48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49	26310	컴퓨터 제조업
150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151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52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153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154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55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56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157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58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59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160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61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62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163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64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65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166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67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68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69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170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71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172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73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74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175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176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177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78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79	28112	변압기 제조업
180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81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82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183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184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185	28202	축전지 제조업
186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87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88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89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90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91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192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193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194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195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196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197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98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199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0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01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02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03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04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05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06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07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08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09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10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11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12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13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14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15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6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17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18	29221	전자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19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20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21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22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23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24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25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26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27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28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29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30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31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32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33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34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235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36	30331	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37	30332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238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39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40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41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242	31111	강선 건조업
243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244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45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46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47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248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249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50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51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52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53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254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55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56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257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58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59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260	35111	원자력 발전업
261	35112	수력 발전업
262	35113	화력 발전업
263	35114	태양력 발전업
264	35119	기타 발전업
265	35120	송전 및 배전업
266	35130	전기 판매업
267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68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9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270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71	37011	하수 처리업
272	37012	폐수 처리업
273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274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275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276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277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278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279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280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281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282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83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284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85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286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87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288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289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290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291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292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293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294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295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296	46106	기계 및 장비 중개업
297	46109	상품 종합중개업
298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299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300	46419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301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302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303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304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305	47111	백화점
306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307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308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309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310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311	49401	택배업
312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313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314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315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316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317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18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319	52101	일반 창고업
320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321	52103	농산물 창고업
322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323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324	58112	만화 출판업
325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326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7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8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9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0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1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2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3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4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335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336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337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338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339	60100	라디오 방송업
340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341	60222	유선방송업
342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43	61210	유선통신업
344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345	61291	통신 재판매업
346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347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48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349	62022	컴퓨터 시설 관리업
350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351	63111	자료 처리업
352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53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354	63910	뉴스 제공업
355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356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357	64121	국내은행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58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359	64912	개발금융기관
360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361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362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363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364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365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366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367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368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369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370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371	71310	광고 대행업
372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373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374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375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76	71531	경영컨설팅업
377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378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79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0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1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2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383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384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385	72924	지도제작업
386	73202	제품 디자인업
387	73203	시각 디자인업
388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389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390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391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92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93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94	75994	포장 및 충전업
395	76110	자동차 임대업
396	76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397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98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399	76291	서적 임대업
400	76292	의류 임대업
401	762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402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403	76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04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405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406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407	84213	환경 행정
408	84405	소방서
409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410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411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412	85709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413	86101	종합병원
414	86102	일반병원
415	86103	치과병원
416	86104	한방병원
417	86105	요양병원
418	86201	일반의원
419	86202	치과의원
420	86203	한의원
421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422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423	86901	앰블런스 서비스업
424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425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426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427	90191	공연 기획업
428	90192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429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430	951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별첨 2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66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61	병원
862	의원
869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별첨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별첨 4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별첨 5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 아래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기간	비고
과기부	우수기업연구소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인증서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page=33	3년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선정증서	http://www.gomentoring.or.kr/	3년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설정
	K-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멤버십 서비스 협약서	www.born2global.com	1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지원사업 최종선정 통보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id=x=3	1년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확인서	www.smes.go.kr/venturein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팁스(TIPS)	과제수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jointips.or.kr smtech.go.kr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설정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아기유니콘200 선정서	www.k-unicorn.or.kr	1년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기간	비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3년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우수기업연구소 인증서	www.atac.or.kr	4년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지원기간에 준하여 인정기간 설정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증	www.kidp.or.kr	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인증서	https://styletech.kidp.or.kr/	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표창장	www.keit.re.kr	5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www.wcp.or.kr	3년	유효 기간 연장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월드클래스300 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서,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신제품(NEP)인증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해수부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tech.kimst.re.kr	5년	
	예비오션 스타 기업	예비 오션스타기업 선정 증서	없음	3년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인증서	https://celc.koti.re.kr/	3년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http://keiti.re.kr (주요사업>환경기술 개발>기후탄소기술 개발>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3년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기간
과기부	우수기업연구소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인증서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	3년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선정증서	http://www.gomentoring.or.kr/	3년
	K-ICT 해외진출지원사업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멤버십 서비스 협약서	www.born2global.com	1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지원사업 최종선정 통보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idx=3	1년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확인서	www.smes.go.kr/venturein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팁스(TIPS)	과제수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jointips.or.kr smtech.go.kr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아기유니콘200 선정서	www.k-unicorn.or.kr	1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3년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우수기업연구소 인증서	www.atac.or.kr	4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증	www.kidp.or.kr	3년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기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인증서	https://styletech.kidp. or.kr/	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표창장	www.keit.re.kr	5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www.wcp.or.kr	3년
	월드클래스300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서,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신제품(NEP)인증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해수부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tech.kimst.re.kr	5년
	예비오션 스타 기업	예비 오션스타기업 선정 증서	없음	3년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인증	인증서	https://celc.koti.re.kr	3년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http://keiti.re.kr (주요사업>환경기술 개발>기후탄소기술 개발>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3년

별첨 6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경상북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지능형 디지털 기기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4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제조업	2711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9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1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123
	축전지 제조업	2820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9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9	도금업	2592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4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3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
	그 외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열처리업	25921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203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친환경 융합 섬유소재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4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1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13213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3222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219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3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9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4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2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3994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402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9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3
	탄소섬유 제조업	23995	합성섬유 제조업	2050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1	재생섬유 제조업	20502
	화학섬유 방적업	13103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면직물 직조업	13211	기타섬유, 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업	29269
라이프 케어 뷰티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1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9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2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장류 제조업	10743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9
	화장품 제조업	20423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0499	차류 가공업	1079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4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24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19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김치류 제조업	10301			

□ 대구광역시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 제조업	27192	기타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2642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화장품제조업	2042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4	한약약품제조업	21220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	1079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9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1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09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1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일반전기 공사업	423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12
	축전지 제조업	28202	일반 통신 공사업	423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속도계 및 적산기계 제조업	27214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유선통신업	61210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1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태양력 발전업	35114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23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500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수송기기 / 기계소재 부품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2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34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299
	자동차 차체용 신품 제조업	30320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3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금속 열처리업	25921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2591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30332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40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22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도금업	25922
	고무패킹류 제조업	22191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9			

별첨 7**고용위기지역 현황 ('22.1.1. 현재)**

- * 사업 참여 신청 당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인정
- *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지역이 추가·제외되거나 각 지역의 인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지역	기간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18.4.5~'22.12.31
목포·영암	'18.5.4~'22.12.31

별첨 8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22.1.1. 현재)

- * 사업 참여 신청 당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업종이 추가·제외되거나 각 업종의 인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업종				기간
조선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16.7.1. ~'22.12.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함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품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여행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N752)			'20.3.16.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0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			'20.3.16.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업종		기간																		
관광운송업	<p>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p> <table border="1" data-bbox="368 456 1187 976">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H492 육상 여객 운송업</td> <td>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td> <td>49232 전세버스 운송업</td> </tr> <tr> <td rowspan="2">H501 해상 운송업</td> <td>5011 외항 운송업</td> <td>50111 외항 여객 운송업</td> </tr> <tr> <td>5012 내항 운송업</td> <td>50121 내항 여객 운송업</td> </tr> <tr> <td rowspan="2">H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td> <td rowspan="2">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td> <td>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td> </tr> <tr> <td>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td> </tr> <tr> <td>H511 항공 여객 운송업</td> <td>5110 항공 여객 운송업</td> <td>51100 항공 여객 운송업</td> </tr> </tbody> </table> <p>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도시자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3)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같은 법 제3조 제1~6호)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업체 5)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 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H501 해상 운송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H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H511 항공 여객 운송업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20.3.16.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H501 해상 운송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H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H511 항공 여객 운송업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공연업	<p>라.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p> <table border="1" data-bbox="368 1592 1187 2018">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td> <td rowspan="2">9011 공연시설 운영업</td> <td>90110 공연시설 운영업</td> </tr> <tr> <td>90121 연극단체</td> </tr> <tr> <td rowspan="2">9012 공연단체</td> <td>90122 무용 및 음악단체</td> </tr> <tr> <td>90123 기타 공연단체</td> </tr> <tr> <td rowspan="2">9013 자영 예술가</td> <td>90131 공연 예술가</td> </tr> <tr> <td>90132 비공연 예술가</td> </tr> <tr> <td rowspan="3">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td> <td>90191 공연 기획업</td> </tr> <tr> <td>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td> </tr> <tr> <td>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td> </tr> </tbody> </table>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 공연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0.3.16.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 공연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업종		기간													
	2)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영화업	<p>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59130), 영화관 운영업(59141)</p> <table border="1" data-bbox="368 663 1185 1131">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J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td> <td rowspan="3">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td> <td>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td> </tr> <tr> <td>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td> </tr> <tr> <td>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td> </tr> <tr> <td rowspan="2">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td> <td>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td> </tr> <tr> <td>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td> </tr> <tr> <td>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td> <td>59141 영화관 운영업</td> </tr> </tbody> </table> <p>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수리한 업체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J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21.4.1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J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수련시설	<p>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p> <table border="1" data-bbox="368 1485 1185 1603">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P856 기타 교육기관</td> <td>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td> <td>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td> </tr> </tbody> </table> <p>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P856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21.4.1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P856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유원시설	<p>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p> <table border="1" data-bbox="368 1872 1185 2018">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td> <td>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td> <td>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td> </tr> </tbody> </table>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21.4.1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업종		기간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 수리한 업체							
외국인전용 카지노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21.4.1 ~'22.3.31						
항공기부품 제조업	<p>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31321),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31322)</p> <table border="1" data-bbox="368 775 1185 925">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td> <td>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td> <td>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td> </tr> </tbody> </table>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1.4.1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준공영제 제외)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가~라)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 다만, 공영제 및 준공영제는 제외한다.	'21.4.1 ~'22.3.31						
항공기 취급업	<p>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p> <table border="1" data-bbox="368 1339 1185 1451">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H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td> <td>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td> <td>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td> </tr> </tbody> </table> <p>2)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면세점	<p>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p> <table border="1" data-bbox="368 1630 1185 1720">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G471 종합 소매업</td> <td>4713 면세점</td> <td>47130 면세점</td> </tr> </tbody> </table> <p>2)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3) 전체 매출액 중 위 2)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및 제4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G471 종합 소매업	4713 면세점	47130 면세점	'20.4.27.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G471 종합 소매업	4713 면세점	47130 면세점						

업종				기간						
전시·국제회의업	<p>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p> <table border="1" data-bbox="368 365 1187 535"> <thead> <tr> <th data-bbox="368 365 639 421">소분류</th> <th data-bbox="639 365 911 421">세분류</th> <th data-bbox="911 365 1187 421">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8 421 639 535">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td> <td data-bbox="639 421 911 535">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td> <td data-bbox="911 421 1187 535">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td> </tr> </tbody> </table> <p>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p> <p>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항버스	<p>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p>									

별첨 9

지원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유해업소</p>	<p>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p> <p>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p>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p>

구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풍속영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 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营业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구분	내용
	<p>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p> <p>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p> <p>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营业을 말한다.</p> <p>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营业을 말한다.</p> <p>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구를 말한다.</p> <p>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p>

별첨 1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

* 아래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만 15~34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이어야 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 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 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p>다음 40대 일자리 지원대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I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서 식

■ [서식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	------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2.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명)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

구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 수												

기업 구분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성장유망업종 <input type="checkbox"/> 지식서비스산업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산업 <input type="checkbox"/> 문화콘텐츠산업 <input type="checkbox"/> 청년창업기업 <input type="checkbox"/> 미래유망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력산업 <input type="checkbox"/> 고용위기지역 기업 <input type="checkbox"/> 특별고용지원업종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3. 채용 계획

채용 예정 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 급 여	원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성명	채용일
※ 참여신청 전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청년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4.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커리어스타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	---

사 업 주 확 인 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 “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지원대상 청년 고용이후 1년 동안 고용 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확인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특례”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가능	[]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확인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확인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커리어스타 운영기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 · 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고용센터 장
(주)커리어스타 운영기관 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 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인원		명		

1. 기존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 급 여	원

2. 변경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 급 여	원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 채용계획을 변경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커리어스타운영기관장 귀하

채용자 명단 제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인원		명		

채용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주소정 근로시간	월보수액	취업애로 유형 (해당하는 유형 모두 체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 취업애로 유형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자영업 폐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커리어스타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2. 근로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4. (필요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병역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원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	---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 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 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_____	(전화 : _____)
	주 소 : _____	
	대 표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_____	
	연 락 처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확 인 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 단, “특례”(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커리어스타 운영기관장 귀하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1.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통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임

2. 동 사업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요건으로 지원금을 받던 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최장 1년간 지원

3. 동 사업 참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청년의 채용일 기준 해당하는 최종 학력사항을 아래 표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졸업	수료	중퇴	휴학	졸업 예정	재학 중
고등학교						
대학(교)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참 여 청 년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확 인 서 (장려금 신청 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①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⑦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장려금신청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 단, “특례”(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기타	
①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신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확인
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 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커리어스타 운영기관장 귀하